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42호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443호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정선군 조례 제2444호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 8
- 정선군 조례 제2445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 15
- 정선군 조례 제2446호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19
- 정선군 조례 제2447호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정선군 조례 제2448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8
- 정선군 조례 제2449호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32
- 정선군 조례 제2450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7
- 정선군 조례 제2451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정선군 조례 제2452호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정선군 조례 제2453호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 정선군 조례 제2454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정선군 조례 제2455호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 75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60호 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 77

# 조 례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42호

###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議”자를“의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議”자를 “의회”자로 한다.

별표1, 별표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p> <p>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議"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정선군의회" 자를 표시한다.</p> <p>2.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정선군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 ----- -----.</p> <p>1. ----- ----- ----- "의회"자 ----- ----- -----.</p> <p>2. ----- ----- "의회"자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별표 1]

【개정 전】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2조 관련)

모 형 도	규 격
<p style="text-align: center;">가 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정 선 군 의 회</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세 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 세로 = 3 : 2</li> <li>○ 무궁화 도형의 직경 : 세로의 3/5</li> <li>○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 원의 직경 : 무궁화도형 직경의 1/1.9</li> <li>○ “議”자의 크기 : 원 직경의 0.8/1</li> <li>○ 정선군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0</li> <li>○ “정선군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li> </ul>

【개정 후】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2조 관련)

모 형 도	규 격
<p style="text-align: center;">가 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정 선 군 의 회</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세 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 세로 = 3 : 2</li> <li>○ 무궁화 도형의 직경 : 세로의 3/5</li> <li>○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 원의 직경 : 무궁화도형 직경의 1/1.9</li> <li>○ “의회”자의 크기 : 원 직경의 0.8/1</li> <li>○ 정선군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0</li> <li>○ “정선군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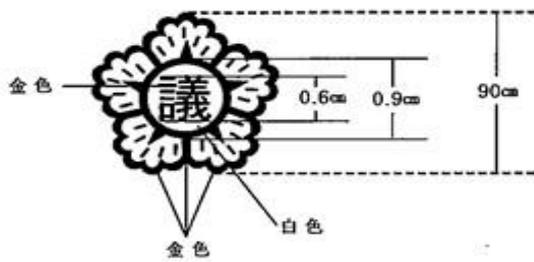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부착

[별표 2]

【개정 전】

정선군의회의원 배지제식(제6조 관련)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 격

모형내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m
화 형	5지	1.4m
화반원형	1	1.0m
원 자		0.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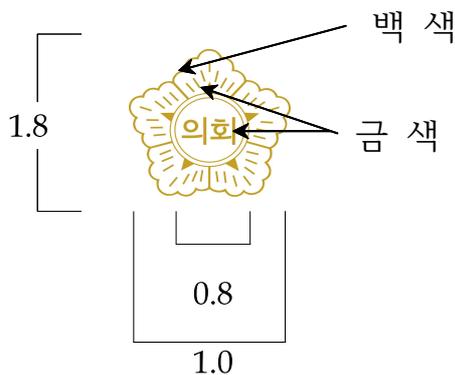
다. 규 격

1. 은(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2. 색채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한다.

【개정 후】

정선군의회의원 배지제식(제6조 관련)

가. 모형 및 색상



나.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cm
무궁화형의 가운데 원	직경	1.0cm
“의회”	직경	0.8cm

다. 재료 및 방법

- 은으로 하되, 모형 입체적으로 제작
- 색상 중 “금색”은 금으로 도금

개 정 이 유

-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문 “國”자를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선군민의 대의기관인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존중 및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의회기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제2조)
-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 세부내용 개정(별표 1, 별표 2)
  -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3호

##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수도급수조례”를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4호

##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범위) 정선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 일부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해당 인용조항. 이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한다.
2. 「정부조직법」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처 또는 부서의 명칭
3.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
5. 그 밖에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제3조(대상조례 및 개정사항) 제2조에 따른 개정범위의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일괄 일부개정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제3조 관련)

연번	소관부서	조례명	조항/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1	의회사무과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본적(국적)	국적(외국인에 한정한다)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	기획감사실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부조직법」)
3		정선군 상징물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4	자치행정과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안전행정부장관	인사혁신처장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부조직법」)
5			제8조제1항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제2항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6	정선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7	정선군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보호법」)
8	세무 회계과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9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10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	제1조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기본법」)
11	여성 청소년과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 관한조례	제1조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청소년기본법」)
12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3	여성 청소년과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본적	등록기준지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4	주민 생활 지원과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삭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	민원봉사과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17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제6조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삭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게 된 경우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8		정선군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		정선군 산지지역 자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해외여행 및 심신장애	해외여행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1	환경 산림과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2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3	농업 축산과	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4	문화 관광과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13조제2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5		정선군향토박물관 관운영조례	제10조제4호	정신이상자	삭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	지역 경제과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7		정선군 건축물과지의 제설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신체장애자	장애인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8	안전 건설과	정 선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통합지휘소	통합지원본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처장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부조직법」)
			별표 1	생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산림과 수질환경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3	산림정책과	환경산림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생태환경과	환경산림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산림정책과	삭제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별표 4	생태환경과	환경산림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산림정책과	삭제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상하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별표 5	생태환경과	환경산림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29	정 선 군 지 역 자 율 방 재 단 운 영 등 에 관 한 조 례	제6조제3 호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삭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30	정 선 군 지 진 피 해 시 설 물 위 험 도 평 가 단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별지 제2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31		정선군공영버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2 및 「지방 자치법」 제1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및 「지방자치법」 )		
32	도시 건축과	정선군 건축조 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33		정 선 군 공 동 주 택 지 원 및 분 쟁 조 정 조 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34	동계 올림픽 지원단	정선군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국민체육진흥법」 )		
34	동계 올림픽 지원단	정선군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	제7조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생활체육담당 주사가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지원 담당주사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 경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35			정 선 군 체 육 시 설 물 관 리 및 운 영 조 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법」 )	
	별지 제2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				

			별지 제3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36	농업 기술 센터	장안농업계업협 운영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6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7호서식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제 정 이 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 용어 등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 「정부조직법」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처 또는 부서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 정비(안 제2조제3호)
-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불일치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5호)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5호

##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2. 2명의 위원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한다.
  -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해마다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기타 띄어쓰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6호

####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선군번영연합회(이하 “군번영연합회”라 한다)”란 군번영연합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사업비
- 2.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
- 3.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연합회 및 그 회원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추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 규정(안 제3조)
  -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사업비
  -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
  -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표창 등 규정(안 제4조)
  -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선군번영연합회 및 그 회원에게 표창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7호

##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정선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선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제2조제3항 중 “위촉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 이장이”로, “자 중에서 리장이 5인이내”를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해당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및 문화복지”를 “및 문화·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제2항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제2항 중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를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해당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를 “읍·면장에게 즉시 알려야”로, “3일 이내에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의사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수입,”를 “사업수입, 자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간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서기는 그 처리한 사무를 처음 선임된 간사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리개발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정선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당연직위원은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산림계장, 영농회장이 된다.</u></p>	<p>② <u>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u></p>
<p>③ <u>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리장이 5인이내로 위촉한다.</u></p>	<p>③ <u>위촉직 위원은 이장이 -----사람 중에서 5명 이내 -----.</u></p>
<p>제3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u></p>	<p>제3조(기능) <u>위원회는 해당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u></p>
<p>1.·2. (생 략) 3. <u>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u> 4. (생 략) 5.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u></p>	<p>1.·2. (현행과 같음) 3. ----- 및 문화·복지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p>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있을 경우 -----  
-----  
-----.

제5조(감사)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  
-----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 -----  
-----  
-----.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



개 정 이 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리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함(안 제2조)
  -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 위원회 기능, 위원임기, 회의소집, 간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제8조)
-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48호

###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각 1명

2.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정선군외식업협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9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정 이 유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
- 아동빈곤 문제에 대한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양결핍에 따른 발달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향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아동복지법」 제35에 따른 기능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역할 수행(안 제3조)
  -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단체 선정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
-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를 11명 이내로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촉
- 위촉위원 임기(3년) 및 위원 해촉, 위원장 등 직무 규정  
(안 제5조 부터 제6조)
- 위원회 운영(회의, 의결 등) 규정(안 제7조)
- 참석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안 제7조)
-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안 제8조)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9호

##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정선군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그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의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 지형·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안 제8조 ~ 제16조)
- 지질공원 전담기구 설치·운영(안 제17조)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안 제18조)
- 지질공원의 안내·해설 등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안 제19조)
- 지질공원 활용·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안 제20조)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0호

###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7조에 따라”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관광객 인솔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제1항 중 “군민과 투표자에 대하여”를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민과 투표자”를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군민 : 정선군”을 “군민: 군”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명예군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5. 자매결연도시민: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군민과 투표자”를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그 밖에 관람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중 “면제한 자”를 “면제한 사람”으로, “면한액”을 “면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입금중 일부를 당해”를 “수입금 중 일부를 해당”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규정된”을 “정한”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의2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화 암 동 굴			야 영 장		캠 핑 캐 라 반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지사용료	데크사용료	3인용	4인용	6인용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1인승	2인승
일 반	개인	5,000	3,500	2,000	10,000	20,000	· 성수기 10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00,000 - 평일 60,000	· 성수기 12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20,000 - 평일 70,000	· 성수기 150,000 · 비수기 - 주말, 공휴일 150,000 - 평일 80,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단체	4,500	3,000	1,500										
군민, 명예군민, 자매결연 도시민, 정선군 숙박관광객	개인	3,500	2,500	1,500										
	단체	3,000	2,000	1,000										
투표자	개인	3,000	2,000	800										
	단체	2,500	1,500	500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7월 ~ 8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7조에 따라----- -----징수에----- -----정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1.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생략)  ②기타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3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
제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등) ①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②·③ (생략)	제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등) ① ----- -----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군수는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만65세이상의 노인. 단, 모노레일의 이용은 제외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 추가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 9. (생 략)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11. 기타 필요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게시) --  
-----  
-----  
-----게시해야-----.

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  
-----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3. -----  
-----제67조  
에 따른-----  
-----  
-----  
-----  
-----1명-----
4. -----출입하  
는 사람
5. ~ 9. (현행과 같음)
10. -----제2조  
에 따른-----  
-----  
-----  
-----소지한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  
는 사람 1명
11.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관광객  
인솔자

<신 설>

제7조의2(감면) ① 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군민과 투표자에 대하여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군민과 투표자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민 : 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삭 제

3. 투표자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 설>

<신 설>

③ 군민과 투표자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삭 제

<신 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감면) ① -----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②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1.군민: 군-----  
-----사람을-----  
-.

2. 삭 제

3. 명예군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5. 자매결연도시민: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군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

④ 삭 제

⑤ 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  
-----사람은-----

<p>할 수 있다.</p> <p>1. 삭 제</p> <p>2. 술에 만취하여 입장 및 관람에 위험이 있다고 <u>인정하는 자</u></p> <p>3. (생 략)</p> <p>4. 기타 관람중 시설물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11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요금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2조(수입금의 처리) 관람료·과태료 및 시설사용료의 <u>수입금중 일부를</u> 당해 관광지 등의 보존,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u>충당하여야</u> 한다.</p> <p>제13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u>규정된 것</u>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u>의한다</u>.</p> <p>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u>범위</u>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p> <p>1. 삭 제</p> <p>2.----- -----<u>인정되는 사람</u></p> <p>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관람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제11조(과태료) ----- -----<u>면제한 사람</u>----- -----<u>면제한 금액</u>----- -----</p> <p>제12조(수입금의 처리) ----- -----<u>수입금</u> <u>중 일부를 해당</u>----- ----- -----<u>충당해야</u>-----.</p> <p>제13조(준용) ----- -----<u>정한</u>----- ----- -----<u>따른다</u>.</p> <p>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 ----- -----<u>범위</u>----- -----</p> <p>제14조(시행규칙) ----<u>조례의</u>----- ----- -----</p>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용료 상향조정(안 제3조 “별표1”)
- 장애인 동행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안 제7조)
- 명예군민, 자매결연 도시민 및 정선군 숙박관광객과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안 제7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1호

###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를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함은 군”을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말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를 “따른 허가서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징구할”을 “받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를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공공시설(야영장, 산막)”을 “공공시설(야영장, 산막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징수케”를 “위탁하여 징수하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휴양단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제11조제1항제3호 중 “미만인자”를 “미만인 사람”으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민에 대하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선군민은 다음 각호”를 “군민은 다음 각 호”로, “제시 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정선군민임”을 “그 밖에 군민임”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훼손하는 자”를 “훼손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환불하지”를 “되돌려 주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시설이용료 요금표(제9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이 용 료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산 막	26㎡(8평형)	40,000	60,000	60,000
	56㎡(17평형)	80,000	120,000	120,000
	79㎡(24평형)	100,000	170,000	170,000
	195㎡(59평형)	250,000	350,000	350,000
야 영 장	데크사용료	10,000	10,000	10,000

※ 비수기 : 매년 4월 ~ 6월, 9월 ~ 11월

성수기 : 매년 1월 ~ 3월, 7월 ~ 8월, 12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u>	<u>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u>의하여</u> 실시계획 승인 되어 조성한 휴양단지의 <u>운영관리와 기타</u>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 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라</u> ----- ----- ----- <u>그 밖에</u> ----- <u>정</u> <u>함</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u> 같다.	제2조(정의) ----- ----- <u>다음 각 호와</u> -----.
1. “휴양단지”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u>의거</u> 실시계획 승인된 광원휴식공간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 ----- <u>따라</u> ----- ----- -----.
2. “청소비”라 <u>함은</u>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u>규정</u> 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u>함은</u> <u>정선군</u> <u>(이하 “군”이라 한다)</u> ----- ----- ----- <u>따른</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 ① 휴양단지는 <u>군수</u> 가 관리한다.	제4조(관리) ① ----- <u>정선군</u> <u>수(이하 “군수”라 한다)</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의 사용 및 사</u>	⑥ <u>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말한다)</u> -----

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  
-----  
----- 따른다.

제5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휴양단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을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 제출해야-----.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 제1항에 따라-----  
-----  
-----  
----- 따른 허가서를 교부해야-----  
-----.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허가취소) -----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휴양단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소비)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단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청소비를 징구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청소비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시설이용료)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단지의 공공시설(야영장, 산막)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단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

6.그 밖에-----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에 따라-----

제8조(청소비) ① -----제3조에 따라-----  
-----받을-----  
-----제4조에 따른-----

②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  
-----따른다.

제9조(시설이용료)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야영장, 산막을 말한다)-----

제10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각 호에 따른다.

1. -----

에게 징수하는 청소비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 2.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등에 관리자를 지정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2. 당해 휴양단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 3. 6세 미만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정선군민에 대하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민은 다음 각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기타 정선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  
-----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2. -----  
-----  
-----  
-----  
-----위탁하여 징수하게-----.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  
-----.

- 1. -----출입하는 사람
- 2. 해당 휴양단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 3. -----미만인 사람-----이상인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  
-----  
-----  
-----군민은 다음 각 호-----  
-----제시해야-----  
-----.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군민임-----  
-----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

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자
-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 5. 기타 휴양단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이 미 납부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이용료의 사용) ① 징수된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단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시설확충,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부대 경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정선군 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1. (현행과 같음)
- 2.-----거부하는 사람
- 3.-----하는 사람
- 4.-----  
----훼손하는 사람
- 5.그 밖에-----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  
-----  
-----되돌려 주지-----.  
-----제12조에 따른-----  
-----.

제14조(수수료 및 이용료의 사용) ① ---  
-----  
-----그 밖에-----  
-----.

② 제10조제2호에 따라-----  
-----.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정선군 폐기물관리예 관한 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개 정 이 유

- 휴양단지 시설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 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용료 상향조정(안 제9조 “별표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2호

####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선아리랑상품권(1인 3천원 상당 이상)”을 “정선아리랑상품권(1인 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으로,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대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환불하여야 할 상당”을 “되돌려 주어야 할 타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람”을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정선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관광객 인솔자

10.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군민(군의 주민을 말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자”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금지하여야”를 “금지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금액을 배상하여야”를 “금액을 배상해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군수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전대하여”를 “다시 대여해”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민속문화 시설 체험을 통한 관광명소로서의 기능 창조를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운영에</u>----- ----<u>정함</u>-----.</p>
<p>제3조(위치) 아라리촌은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에 둔다.</p>	<p>제3조(위치)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p>
<p>제5조(입장 및 이용료) ① 아라리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아리랑상품권(1인 3천원 상당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p>	<p>제5조(입장 및 이용료) ① ----- -----<u>정선아리랑상품권(1인 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u>-----<u>경우에 한정</u>-----.</p>
<p>② 전통가옥의 숙박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u>별표 2</u>----- -----<u>납부해야</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아라리촌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u>제2항에 따른</u>----- ----- -----<u>게시해야</u>-----.</p>
<p>④ 전통가옥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전통가옥 이용권의 효력은 1박에 한한다.</p>	<p>④ ----- ----- ----- -----<u>한정한다.</u>-----</p>
<p>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이용료의 환불) ----- ----- ----- ----- -----<u>되돌려 주어야 할 타당</u>-----</p>

제7조(입장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 5. 6. (생략)
- 7. 정선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
- 8. (생략)
- 9.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정선군민(정선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의 입장 및 전 통가옥의 이용

제7조(입장의 특례) -----  
-----  
----- 해당하는 사람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4. -----  
-----  
-----
-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 5. 6. (현행과 같음)
- 7. 군 -----  
-----  
-----
- 8. (현행과 같음)
- 9.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관광객 인솔자
- 10.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  
-----  
-----

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삭 제
-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라리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아라리촌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 략)
- 4. 기타 군수가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아라리촌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 아라리촌의 시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  
-----.

- 1. 삭 제
- 2. -----  
-소지한 경우
- 3. -----  
-----한 경우
- 4. 그 밖에 -----  
-----인정하는 경우

② -----인정할 경우-----  
-----  
-----.

제9조(행위의 제한)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금지해야-----  
-----

제10조(손해배상) -----  
-----  
-----사람은-----  
-----금액을 배상해야-----.

제11조(공무원) -----  
-----  
-----  
-----제12조에 따라-----  
-----.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라리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

② -----  
-----제1항에 따라-----  
-----  
-----  
-----  
-----  
-----  
-----

③ -----범위-----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  
-----  
-----  
-----인정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제2항에 따라-----  
-----  
-----  
-----다시 대여해-----  
-----

제15조(시행규칙) -----시행에-----  
-----  
-----  
-----

개 정 이 유

- 입장료 면제 대상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애인 동승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3호

####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동리 산70-13번지”를 “엽기소나무길 518-23”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개당 1회에 한한다”를 “1개마다 1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환불하지”를 “되돌려 주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불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 환자

제8조제1항제2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자”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한하여야”를 “제한해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금지하여야”를 “금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을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전대하여”를 “다시 대여해”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공원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의 효력은 타임캡슐 1개당 1회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병자
-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4. (생략)
- 5. 기타 군수가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  
-----  
-----게시해야-----.

③ -----  
--1개마다 1회에 한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  
-----되돌려 주지-----.  
-----  
-----되돌려 주어야-----.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  
-----  
-----사람은-----.

- 1. 감염병 환자
- 2. -----  
-소지한 사람
- 3. -----  
-----한 사람
- 4. 그 밖에-----제한해야-----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금지해야-----  
-----

제10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캡슐 내 보관물이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  
-----  
-----  
----- 경우 -----  
-----.

② -----  
----- 사람은 -----  
----- 배상해야 -----.

제11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라 -----  
-----  
-----.

③ ----- 범위 -----  
-----.

④ -----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  
-----.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  
-----  
-----  
----- 다시 대여해 -----  
-----.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타임캡슐공원 위치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후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4호

##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거주하는 자”를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민”을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선군민”을 “군민”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정선군민임”을 “그 밖에 군민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훼손하는 자”를 “훼손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밖에”를 “밖에 군수가”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시설이용료의 환부)”를“(시설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환부하지”를 “되돌려 주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령	구 분	이 용 료	
		(당일)	(체류)
주 차 장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	500	1,000
		2,000	4,000
		4,000	8,000
야 영 장	노 지	비수기 주중	8,000
		비수기 주말, 성수기	10,000
	데 크	비수기 주중	10,000
		비수기 주말, 성수기	15,000

※ 성수기: 7월 ~ 8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p>1. (생 략)</p> <p>2. 기타 정선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p> <p>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p> <p>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p> <p>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p> <p>5.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에 군민임-----</p> <p>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 -----해당하는 사람----- -----</p> <p>1. (현행과 같음)</p> <p>2. -----거부하는 사람</p> <p>3. -----하는 사람</p> <p>4. ----- ----훼손하는 사람</p> <p>5.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p> <p>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 -----되돌려 주지----- -----</p> <p>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① ----- ----- -----사용해야-----.</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준용)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개 정 이 유

- 마을관리 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 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용료 상향 조정(안 제6조 “별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제224회 정선군의회(2015. 9.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55호

##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산정)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반환)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 개 정 이 유

- 「도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되 조례에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기준 적용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안 제3조)
  - 도로점용료의 반환(안 제4조)
- 그 밖에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조문 내용 삭제

# 규 칙

2015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0호

### 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범위) 정선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 일부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해당 인용조항. 이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한다.
2.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명칭
3.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
4. 그 밖에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제3조(대상조례 및 개정사항) 제2조에 따른 개정범위의 규칙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일괄 일부개정 대상규칙 및 개정사항(제3조 관련)

연번	소관부서	규칙명	조항/서식	현행	일부개정	개정사유
1	기획 감사실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3	자치 행정과	정선군사무인계 인수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위법 인용 조문변경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자치법시행령」)
4		정선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상위법 인용 명칭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5		정선군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6		정선군 정보공개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7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8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9	자치 행정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10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11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 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1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12	세무 회계과	정선군제안서평 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경리관	정선군재무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명 칭 정비(「지방재정법」)
13	여성 청소년과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제1항	① 영 제40조제2항	영 제44조제3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5호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 실에 맞게 정비(「민법」)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14		정선군여성회관 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15		정선군청소년유 해환경신고포상 금지급규칙	제1조	제44조	제49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1호	제30조제1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2호	제30조제2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3호	제30조제3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17조제1항	제16조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4호	제30조제4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조의2제5호	제30조제5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6호	제30조제6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6조의2제7호	제30조제7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15	여성 청소년과	정선군청소년유 해환경신고포상 금지급규칙	별표 1	제26조의2제8호	제30조제8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 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 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3조2	제22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법제26조제1항의규정 에의한법제2조4호가목( 6)의환각물질 또는(7)의약물또는나목 의청소년유해물건의관 매·대여·배포 금지의의무를위반한행 위	삭제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표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청소년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6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7	주민생활 지원과	정선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8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19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0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0	주민생활 지원과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0-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0-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1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2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3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4		정선군 국가보훈 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5	환경 산립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6	농업 축산과	정선군 내수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27	지역 경제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법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27	지역 경제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28		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29	도시 건축과	정선군공영버스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 실에 맞게 정비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 례」)
			제7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2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 실에 맞게 정비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 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3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31	동계 올림픽 지원단	정선군농민문화 체육센터 관리조례시행규칙	별제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32	수질 환경 사업소	정선군급수공사 대행규칙	별제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제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 비(「개인정보 보호법」)

			별제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33		정선군 배수살바공사 대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34		정선군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4호	경리관	재무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명칭 변경(「지방재정법」)

제 정 이 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 정비(안 제2조제3호)
- 현재 운용되는 사항과 불일치한 사항 정비(안 제2조제4호)